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License for Electronic Journal

황 옥 경(Ok-Gyung Hwang)**

목 차

- | | |
|--------------------|---------------------------------|
| 1. 서론 | 3. 라이선스 계약모델 비교분석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기본 구조의 비교 분석 |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2 조항의 비교 분석 |
| 1. 3 선행 연구 | 4. 라이선스 계약 현황 및 주요 조항에 대한 설문지조사 |
| 2. 이론적 배경 | 4. 1 조사목적 및 방법 |
| 2. 1 라이선스 계약 | 4. 2 조사 결과 및 분석 |
| 2. 2 저작권법과 라이선스 계약 | 5.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
| 2. 3 논란이 되는 계약 내용 | 6. 결론 |
| 2. 4 라이선스 계약모델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license model which could be used as guidelines during the process of contracting for the use of electronic journals in the academic libraries. The study was done through the following 4 steps.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lated literature, the study examined the licensing principles, the structure of the licen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contracts, and the development of license models in the library.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asic structure of 5 representative license models abroad and 2 domestic licenses, the study established the basic structure of license model. Thirdl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library licensee and the vendor licensor in order to find out the present states and problems of library contracting and their opinion on the core clauses of the contract. Lastly, hav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mentioned above, the study finally developed the license model.

키워드: 전자저널, 라이선스, 라이선스 계약모델, 저작권법, 계약법
E-journal, License, Model License, Contracting, Licensing, Copyright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중앙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강사(hmirim7@dreamwiz.com)
논문접수일자 2004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2월 28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인쇄 형태의 도서나 저널을 구매 또는 구독함으로써 이들 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일단 도서나 저널을 구매 또는 구독하게 되면 이들 자료는 영원히 해당 도서관의 소유가 되며, 이용자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제한으로 이들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이 구독하는 전자 저널의 경우에는 특정 이용 조건 하에서 특정 시간 동안만 이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된다. 허락된 이용권의 내용 혹은 조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방식이 달라진다. 라이선스(license)란 이러한 형태의 이용허락을 의미한다.

최근에 이르러 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은 저작권만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부문에도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면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지침이나 라이선스 계약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지침이나 계약모델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나타나 있는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지식이나 협상 경험 및 전략적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전담하는 사서의 부재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계약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채 출판사 측이 제시하는 라이선스 조항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이 불이익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사서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의 라이선스 계약모델과 같이 계약상의 문제점을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계약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이용 권리를 규명하고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이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에서 라이선스 계약시 참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

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쇄 형태의 자료가 기반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전자 저널이 기반하고 있는 계약법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이용, 도서관 상호대차, 아카이브 및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찰하였고, 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이 출현한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라이선스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회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설정된 기본 구조 및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기관은 모두 83개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70군데이며 대행사가 13군데이다. 조사 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17일간이며 설문지 조사는 전자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두 83건 중 62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4.7%에 이른다.

끝으로, 전체적인 계약모델 구조 및 조항 내용들에 대한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 계약을 의미한

다. 저작권법에서는 “보호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이용허락을 담은 계약”으로 정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다른 계약, 예를 들어 저작권 양도 계약이나 근로 저작자와의 고용계약, 촉탁 저작물을 위한 계약 등과는 구별시키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된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 원칙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선스계약이란 라이선서에 해당하는 출판사와 라이선시에 해당하는 도서관 사이의 법적 의무와 이러한 의무를 파괴한 경우에 구제를 모색하는 권리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법적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이선스는 대개의 경우 계약법을 따르게 되는데,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정도는 해당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협상된 조건에 의거하게 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최초의 정보거래 라이선스 계약법인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서는 계약이라 함은 본 법 및 기타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진 당사자의 합의로부터 발생한 총체적인 법적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제202조 내지 제206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의 성립 조건은 첫째, 청약과 승낙, 둘째, 당사자의 사실 행위, 셋째,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자대리인의 행위, 넷째, 그 외 합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든 방법이다.

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은 대개 출판사가 청약을 하고 대학 도서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동법 제208조 내지 제211조를 적용하여 동 계약의 계약 조건, 즉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당해 기록에 동의하는 때, 그 기록에 담긴 계약 조건이 당해 계약의 계약 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13조에서는 계약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세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크게 '중간상인', '출판사', '최종이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도서관은 엄밀히 말하자면 최종이용자가 아니지만 최종이용자를 위해 봉사하는 라이선스에 해당된다. 라이선스 상에서는 도서관이 라이선스로 명시되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및 회원으로 명시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최종이용자는 이용자로 명시되면서 인증된 이용자 및 비인증 이용자로 나뉘어 명시되고 있다.

Bebbington(2001)은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서 당사자, 정의, 합의사항, 대상, 변경사항, 허락된 이용과 금지된 이용, 이행사항, 보증, 배상, 책임, 계약의 해지,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비용 및 지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라이선스 자료의 문제로서 거래가 되는 정보 주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책임 문제로서 문제의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어떤 과실, 결함, 그리고 명예 훼손이나 비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실행 문제로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

어질 것인지, 언제 종료되고,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쌍방의 관계 설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자료의 문제, 책임 문제, 실행 문제들은 저작권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이다. 이는 어떤 거래의 경우에서도 계약에 의해 명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바, 계약법이 저작권법보다 더 많은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2. 2 저작권법과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자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들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계약 해석에 있어,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관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거래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공정이용의 원칙이나 최초판매의 원칙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이익균형을 위한 법원리를 수정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내용이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디지털 정보거래를 위한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유리하

도록 수정 혹은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법이 유지해오던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간의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이 계약내용이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거래를 통해 저작권법상의 원리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서는 보호되지 않는 대상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시킨다면 그러한 계약의 조건은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즉 저작권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을 위하여 독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법을 이용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Nimmer(2003)는 계약이 지적재산권법의 정책구조 내에 필수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 속에 이 두 법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계약법은 이해관계에 놓인 쌍방이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이 선택하는 체제(*party choice regime*)인 반면에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은 기득권 체제(*vested rights regime*)이다.

둘째, 계약권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갖는 권리이고 재산권은 세상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셋째, 계약법은 쌍방이 달리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시하는 배경 규칙 혹은 기본 규칙을 제공하며, 지적재산권법은 계약법의 배경 규칙 혹은 기본 규칙을 제공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는 같등이나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공존의 관계라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앞으로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저작권법 혹은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해 놓은 세세한 규칙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쳐 어떤 계약 내용 혹은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2. 3 논란이 되는 계약 내용

현재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 도서관 상호대차, 아카이브, 사생활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정이용 관련 계약 조건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공정이용 이외의 저작권법상의 개별규정으로 서 도서관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내에는 공정이용이나 면책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배려를 라이선스에 포함시킬 의무가 없는 라이선서들은 이제 이용자 및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이용에 대한 규정을 결정짓고 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을 통해 특정학술 집단의 공식적인 구성원에게만 이용을 허락하게 되고 동시 접속자 수를 제한하게 된다. “pay-by-view” 체제로 갈 경우, 단지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브라우저에도 가격이 책정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질적인 변화, 라이선스 이용의 증가, 기술보호 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발전으로 인해 개인들은 예전보다 더욱 새로운 발전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공정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저작권자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추가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비판적으로 재고해 볼 점이다.

2) 도서관상호대차 관련 계약 조건

도서관상호대차는 미국의 경우 1976년 저작권법 제108조와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 Works) Guidelin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 1988에 “도서관 특권”이라 하여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1항 3호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

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간의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도서 등의 출력 등에 대해서는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도서관상호대차는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법적으로 크게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상호대차가 인쇄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도서관상호대차와 관련하여 시행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상호대차는 불가능한 경우,

둘째, 인쇄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저널의 도서관상호대차도 허용하는 경우,

셋째, 전자저널의 도서관상호대차를 허용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즉 Ariel과 같은 보안 전송을 통해 파일이 타 도서관에 전송되면 일단 출력이 이루어진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나, 타 도서관에 파일을 전송하는 대신에 기사를 출력하여 수신 도서관에 인쇄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경우이다.

Cox(2000)에 따르면 약 37%의 출판사가 전자 파일을 출력하여 인쇄 형태의 복제물로 도서관상호대차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아카이브 관련 계약 조건

라이선스 계약의 증가 추세는 디지털 정보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임을 보여준다. “(인쇄 형태의) 책인 경우에는 일단 한 번 구매하면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책인 경우에는 접근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권리만 부여 받게 되고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므로 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지식의 보존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게 된다. Okerson(1996)은 “잠재적인 지식 손실” 또는 “안정성의 문제”라는 표현으로 전자 정보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아카이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라이선스 상의 아카이브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가능하다.

첫째, 영구 라이선스의 형식으로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되 도서관에는 어떠한 백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

둘째, CD-ROM이나 마그네틱 테이프와 같은 별개의 매체를 통해 복제본을 제공하는 방식,

셋째,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백 데이터 이용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간호에 대한 접근이 영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영구 접근은 보존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출판사, 여타 관계자가 지속적인 보존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경우, 물론 지금은 보장이 되겠지만 앞으로 해당 사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사생활 보호 관련 계약조건

라이선스를 통한 전자저널의 이용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을 거친 후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증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들 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보호 문제가 중요한 논쟁점이 된다.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는 대개 이름, 주소, 전자 우편 주소, 소속,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되며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 정보가 수집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증가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계약법적 측면의 법적 규율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공정이용이나 도서관 상호대차, 아카이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저작권에 관한 법리가 법이론적으로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저작권 거래를 통해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저작권법상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정보 거래에서도 사서들은 계약법과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경으로 협상 기술의 향상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이용권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 및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2. 4 라이선스 계약모델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출판사측으로부터 제시되며 이들 라이선스는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서들이 이러한 법률지식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협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협상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많은 도서관들이 라이선스 체결을 하지만 어떤 라이선스를 어떤 조건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 정보도 거의 없다. 이렇게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원래 그런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둘째, 도서관 분야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도서관은 이들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실제 라이선스 계약서로 사용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혹은 협상 과정에서 대행사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비교하는 기초자료로 또는 자관의 특성에 맞는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3. 라이선스 계약모델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구조 및 계약조항을 설정하기 위해 국

내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구조 및 계약조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외의 경우에는 특성상 대표성이 뚜렷한 다음의 5개 계약모델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 1) 단일대학도서관이 라이선스인 경우를 대표하는 예일 대학도서관의 Liblicense 라이선스
- 2) 대형 벤더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라이선스인 Cox 라이선스
- 3) 비영리기관이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JSTOR 라이선스
- 4) 대학 컨소시엄이 라이선시 입장을 대표하는 CNSLP 라이선스
- 5) 출판사가 제시하는 라이선스인 NESLi2 라이선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모델로 개발된 사례가 없으나 실제로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계약일반조건 및 김기태(2001)의 e-book을 위한 표준 라이선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1 기본 구조의 비교 분석

대표 사례들의 기본 구조를 매핑하여 종합한 기본 구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3. 2 조항의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이해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이용, 도서관상호대차, 아카이브, 사생활보호 등에 대해 각 라이

〈표 1〉 라이선스 계약모델 종합기본구조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설명조항
①용어정의
②합의내용
③허락된 이용
④금지된 이용
⑤대금 지불
⑥보증
⑦라이선서의 이행의무
⑧라이선시의 이행의무
⑨쌍방의 이행의무
⑩기간 및 해지
⑪일반 원칙
양도
통지
불가항력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분쟁해결
서명
별표
라이선스 자료
대금지불 방법

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였고, 도서관에 유리한 조항과 출판사에 유리한 조항들을 구분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이 체결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사례(이하 국내 현행 라이선스)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의 KERIS 계약서 및 김기태(2001)의 e-book 라이선스 계약에는 문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타 분석 대상이 되는 조항도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비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2. 1 공정이용 관련 조항

공정 이용은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라이선스상에 명시된 이용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허락된 이용 및 금지된 이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공정 이용을 분석할 수 있다. 공정이용과 관련된 것 중 도서관 상호이용 및 아카이브의 경우는 각각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이용, 그리고 점자에 의한 복제, 교육을 위한 강의용 편집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라이선스 계약모델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JSTOR 라이선스만이 다소 제한적인 공정 이용 관련 조항을 담고 있으나 이 외의 모든

〈표 2〉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공정이용 관련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 PCLSN	NESLi2	
인증된 이용자에 방문이용자 포함		0	0	0	0	0	
인증된 이용에 라이선스 자료의 탐색, 보기 및 디스플레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본 한 부 인쇄 및 다운로드 포함.		0	0	0	0	0	
다른 인증된 이용자에게 인쇄 형태나 전자적인 형태로 라이선스 자료의 개별 기사나 아이템의 복제본을 배포		0	0		0	0	
라이선스 자료로의 통합적인 저자명, 기사명, 키워드 색인을 포함하는 접근 허용		0	0		0	0	
내부적인 마케팅 혹은 테스트, 인증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디스플레이, 다운로드, 출력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용 허락			0		0	0	
인증된 이용자를 위한 강의용 편집 교재 허용	인쇄용형태가능	0	0*			0	
	전자형태가능	0	0*				
	사전서면허락필요	0	0*				
점자에 의한 복제 허용		0	강의용편집 교재에한해		0	0	
저작권법 하에서의 권리 명시		0	0	0**	0	0	

* 인쇄용형태가능, 전자형태가능, 사전서면허락필요 이렇게 세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도서관상호대차 관련 조항 내에 저작권법을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이선스는 공정 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단 Cox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조항을 나열하여 라이선서와 라이선서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 경우에는 상당수의 라이선스들이 인증된 이용자에 방문이용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증된 이용자에 의해 다른 인증된 이용자에게 인쇄 형태나 전자적인 형태로 라이선스 자료의 개별 기사나 아이템의 복제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

항을 두고 있는 라이선스는 거의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의 제작을 허락하는 조항도 거의 없다. 강의용 편집교재와 관련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나 저작권법 하에서의 권리나 공정 이용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는 그 비율이 극히 낮다.

상기 국내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조항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현행 라이선스상의 공정이용 관련 조항은 국외 라이선스 계약모델 조항에 나타나 있는 공정이용 수준 보다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2. 2 도서관 상호대차 관련 조항

대부분의 국외 라이선스 계약모델 사례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상호대차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하한 형태로든 도서관 상호이용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현행 국내 라이선스 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비상업적인 학술적 목적을 위한 경우, 요청에 따라 저널 기사를 출력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요청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인 송신은 금하고 있다.

3. 2. 3 아카이브 관련 조항

아카이브/백업 자료와 관련된 각 라이선스

사례별 조항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 아카이브 및 백업 파일과 관련한 라이선스 내용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는 라이선스가 있는 반면에 아카이브 정책만을 별도의 문서로 계약에 첨부하는 라이선스도 있다.

3. 2. 4 사생활보호 관련 조항

각 라이선스 사례별로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라이선스들이 이용 데이터에 대한 기밀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라이선스에서 이용 데이터는 적용 가능한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쌍방간에

<표 3>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도서관상호대차 관련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SLi2
허용	인쇄본 한 부	0	0**	0	0	0
	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동시에 파일 삭제		0**	불가	0	0
	전자적 송신		0**	불가		
불허			0**			

* 각 라이선스는 공히 사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4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표 4>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아카이브 관련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SLi2
라이선시가 백업 복제본 보존		0	0	0*		0**
라이선서 혹은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디지털 아카이브		0	0***			0
라이선시가 디지털 아카이브		0	0			0
무료로 제공되는 중앙 아카이브						0

* 이미지 파일의 CD-ROM 세트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선택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 이 조항은 선택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합의된 바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개별 이용자의 익명성 및 이들의 탐색과 관련한 기밀은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이용자에게만 패스워드 및 여타 접근 정보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들은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3. 2. 5 도서관에 유리한 조항

각 라이선스 사례별로 도서관에 유리한 여타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표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도서관

에 유리한 조항이란 근본적으로 도서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의미한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기일에 대한 명시, 부정기적 비가동 시간에 대한 명시,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항,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사의 보증은 모든 라이선스가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직원 연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라이선스는 JSTOR와 LIBLICENSE 두 곳뿐이며 인증이용자의 법적 위반에 대한 라이선스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라이선스는 Cox와 NEESLi2 라이선스 두 곳뿐인 것

<표 5>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사생활보호 관련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ESLi2
이용 데이터 기밀 유지	0	0	0	0	0

<표 6>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도서관에 유리한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ESLi2
납기일에 대한 명시	0	0*	0	0	0
라이선서의 지원	0		0**		
직원연수	0		0		
부정기적 비가동 시간에 대한 명시	0	0	0	0	0
서비스가 불통이거나 중지되는 경우에 대한 라이선서의 대응	0	0		0	0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항	0	0	0	0	0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사의 보증	0	0	0	0	0
인증된 이용자의 법적 위반에 대한 라이선서의 면책		0		0	0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명시	0	0	0	0	0
이용 데이터의 제공	0	0		0	0
구체적인 이용 데이터 요소의 명시	0	0		0***	0****

* 별표 1에서 일정표 명시.
 ** 별표 B에서 구체적인 지원 사항 명시.
 *** 별표 6에서 제시되고 있다.
 **** 별표 4에서 제시되고 있다.

으로 나타나 있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에서는 납기일, 라이선서의 지원, 직원연수, 부정기적 비가동시간,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3. 2. 6 출판사에 유리한 조항

각 라이선스 사례별로 출판사에 유리한 여타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표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SLi2 라이선스의 경우에만 “as it is” 조항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라이선스에 해당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해당 조항의 존재 유무만을 볼 때 동일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에서도 대부분 이와 관련한 조항은 두고 있다.

3. 2. 7 기타 조항

각 라이선스 사례별로 기타 조항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표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JSTOR 라이선스를 제외한 모든 라이선스가 양도, 통지,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의 수정, 분쟁해결, 불가항력, 일부무효원칙,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JSTOR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분쟁해결, 불가항력,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및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경우에는 중재자 혹은 전문가에 의한 분쟁 해결 노력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국내 라이선스 사례들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는 내용만이 명시되고 있다.

3. 2. 8 소결

라이선스 계약모델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구조 및 주요조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표 7>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출판사에 유리한 조항 비교

조항	계약모델				
	LIBLICENSE	Cox	JSTOR	CNSLP/PCLSN	NESLi2
인증되지 않은 이용의 금지	0	0	0	0	0
상업적 이용의 금지	0	0	0	0	0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조작, 혹은 이로부터 파생물 제작의 금지	0	0	0	0	0
“as it is”	0	0	0	0	
인증된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시의 관리	0	0	0	0	0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의 명시	0	0	0	0	0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및 변경 금지	0	0	0	0	0

〈표 8〉 라이선스 계약모델별 기타 조항 비교

계약모델 \ 조항	LIBLICENSE	Cox	JSTOR	CNSLP/ PCLSN	NESLi2
양도	0	0	0	0	0
통지	0	0	0	0	0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의 수정	0	0	0	0	0
분쟁해결	0	0	*	0	0
불가항력	0	0		0	0
일부 무효원칙	0	0	0	0	0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0	0	**	0	0

* 국제 사이트 관련 분쟁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별표 D에 명시되어 있다.

** 국제 사이트의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두고 있다.

구에서는 다음의 〈표 9〉와 같이 기본구조 및 주요조항을 설정하였다.

4. 라이선스 계약 현황 및 주요 조항에 대한 설문지조사

4.1 조사목적 및 방법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계약 당사자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라이선스 조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전자저널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병원도서관과 출판사를 대리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임하고 있는 국내 대행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3개 기관으로서 이중 대학도서관이 43개, 연구소도서관 및 병원도서관이 27개로서 모두 70개 도서관이며, 대행사가 13개이다.

설문지 조사는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8

일까지 17일간 전자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83건의 설문지 중 62건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는 74.7%의 회수율에 이른다.

4.2 조사 결과 및 분석

설문지 조사의 내용은 크게 라이선스 계약 현황에 대한 내용과 라이선스 조항 관련 내용으로 나누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과 대행사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지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 지침의 유무나 법률적인 자문의 절차 유무, 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의 유무 등의 면에서 볼 때, 도서관은 대행사에 비해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각 조사 대상자별로 요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계약법(28%), 저작권법(2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연구소도서관은 전자저널 및 웹DB 이용법(31%), 저작권법(25%)에 대한 요구

〈표 9〉 라이선스 계약모델 기본구조 및 주요조항

기본구조	주요조항	기본구조	주요조항	
계약일자		라이선시의 이행의무	시의 관리	
계약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인증된 이용자의 법적 위반에 대한 라이선시의 면책 	
설명조항 용어정의				
합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양도 • 계약 시작 및 종료 • 아카이브 방식 	라이선서의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일의 명시 • 접근 정보 제공 • 시스템 정기 점검은 이용 요구가 비교적 낮은 시간대에 실시 • 라이선스 자료의 변경은 가능하나 이 경우 라이선시에게 서면으로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이러한 변경이 라이선시에게 유용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 • 이용 데이터를 수집 및 편찬하여 라이선시에게 제공 • 이용 데이터 기밀 유지 • 기술적 지원 및 이용 교육 제공 	
허락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된 이용에 라이선스 자료의 탐색, 보기 및 디스플레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본 한 부 인쇄 및 다운로드 • 다른 인증된 이용자에게 인쇄 형태나 전자적인 형태로 라이선스 자료의 개별 기사나 아이템의 복제본을 배포 • 라이선스 자료로의 통합적인 저자명, 기사명, 키워드 색인을 포함하는 접근 허용 • 내부적인 마케팅 혹은 테스트, 인증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디스플레이, 다운로드, 출력 • 인증된 이용자를 위한 강의용 편집 교재 허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허용 • 저작권법 하에서의 권리 명시 • 도서관상호대차의 허용 		쌍방의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및 재산권 보호 • 이용 데이터의 기밀 유지
			기간 및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종료 •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지불 대금 반환
금지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되지 않은 이용의 금지 • 상업적 이용의 금지 •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조작, 혹은 이로부터 파생물 제작의 금지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및 변경 금지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혹은 도급계약에 대한 명시 • 통지의 의무 및 통지 방법 •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면책 • 어느 하나 이상의 조항이 무효한 경우에도 나머지 계약 내용의 유효성이나 강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 절차 • 재판관할권 • 준거법
대금지불				
라이선서의 보증 및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서의 저작권 및 이용권 보증 및 책임 • 시스템의 부정기적 가동시간에 대한 제한 명시 • "as it is"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의 범위 • 인증된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된 이용자 • (권소사업회원) • 라이선스 자료 • 접근 방법 • 도서관 구내 • 대금 지불 • 이용 데이터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행사는 협상기술(28%), 전자저널 및 웹 DB 이용법(25%)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행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대학도서관과 연구소도서관은 라이선스 지침 혹은 매뉴얼의 부재가 각각 32%,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행사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례의 부족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지침을 보유한 곳이 한 곳도 없으나 대행사의 경우에는 절반의 비율에 해당하는 곳이 이미 라이선스 지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이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등록된 학생, 직원, 교수진의 교내외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인증된 이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및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 상호이용 부문에서 도서관은 44% 이상의 선호도를 보인 반면 대행사는 0%의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타도서관에 전송 후 출력과 더불어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6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행사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22%만이 지지하고 있으며 44%의 비율에 해당하는 곳은 도서관 상호이용 불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도서관과 대행사 어느 쪽도 도서관이 출력물 형태로 직접 아카이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

호하지 않았으나 각 도서관별로 선호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앙 아카이브”(53%) 방식, 연구소 및 병원 도서관의 경우에는 영구 라이선스 방식(39%), 그리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앙 아카이브” 방식과 도서관 자체의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에 대해 44%라는 동일한 비율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혹은 제 3자에 의한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 및 영구 라이선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라이선스 상에 명시되어야 할 조항과 관련하여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라이선스에 유리한 조항들, 즉 비인증 이용자의 법적 위반에 대한 라이선스 면책 조항, 인쇄 형태 저널 발행과 거의 동시에 혹은 더 이전에 전자저널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남기일 조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비율로 지지한 반면 라이선서에 해당하는 대행사는 역시 라이선서에 유리한 조항들, 즉 인증되지 않은 디지털 복제의 금지,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이나 조작, 파생물 제작의 금지 조항에 대해 87%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양측 모두가 높은 비율로 지지한 조항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조항(전체 75%) 및 이용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조항(전체 77%)이다.

5. 대학도서관을 위한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앞서 제3장에서 라이선스 계약모델 사례 분석 결과와 제4장에서 라이선스 계약당사

자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이용 계약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라이선스 계약모델은 다음과 같이 전문과 별표 외에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별첨 부록 참조).

전문(前文)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계약의 목적

제3조 허락된 이용

제4조 도서관 상호이용

제5조 강의용 편집 교재 및 전자적 보존

제6조 이용의 금지와 사전 협의

제7조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제8조 라이선서의 보증 및 책임의 범위

제9조 라이선서의 이행의무

제10조 라이선서의 이행의무

제11조 쌍방에 의한 이행

제12조 계약기간 및 해지

제13조 총칙 및 기타사항

6. 결 론

190년대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쌍방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내용과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지침으로 참

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 하였다.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와 본 연구가 개발한 계약모델의 구성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계약당사자에 대한 설문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 라이선스 지침의 유무나 법률적인 자문의 절차 유무, 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의 유무 등의 면에서 볼 때, 도서관은 대행사보다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계약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계약당사자에 대한 설문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및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 상호이용 관련 조항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구조는 전문과 별표 외에 1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을 위한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로서는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서 특히 국내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모델이다.
- 2) 단일 도서관의 경우나 컨소시엄의 경우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맞는 계약 조항을 선택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 3)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 다양한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조

항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모

델은 현장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기태. 2001.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에 관한 표준계약서 계약모델 연구』, 한국전자책컨소시엄.

김윤명. 2003. IT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이용계약과 해석. 『Digital Contents』.

신은자. 2001. 전자저널의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139-155.

오병철. 2002. 디지털 정보에 있어서 '사용(이용) 허락' 과 라이선스의 구체적 의미. 『계간 저작권』.

이란주, 황신혜. 2003. 전자저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2): 141-142.

임원선. 2001.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법규(조약·협약). 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축조해설』. 185.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개발위탁계약서를 중심으로』.

홍재현. 2002.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33(4).

황혜경. 2003. 디지털정보자원의 라이선스 체결 동향에 관한 소고. 『정보관리연구』, 34(1): 99-117.

ALA. 1997. "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 Final Draft. <<http://www.arl.org/scomm/licensing/principles.html>>.

Albanese, Andrew Richard. 2001. "Library Journal Survey: Academic Libraries: 2001: Moving from Books to Bytes," Library Journal, 09/01/5254.

Alford, Duncan E. 2002. "Negotiating and Analyzing Electronic License Agreements," Law Library Journal, 94(4).

Bebbington, Laurence W. 2001. "Managing content: licensing and privacy issues in managing electronic resources,"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2).

Bibe, M., Oppenheim, C. and Ramsden, A.

1997. "Copyright Clearance and Digitization in UK Higher Education: Supporting Study for the JISC/PA Clearance Mechanisms Working Party Report."
 <<http://www.ukoln.ac.uk/services/elib/papers/pa/clearance/>>.
- Cox, John. 2000. "Model generic licens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erials Review*, 26(1): 3-9.
- Croft, Janet Brennan. 2001. "Model licenses and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from electronic resourc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9(4): 165-168.
- Giavarra, Emanuella. 1998. "Licensing Digital Resources: How to avoid the legal pitfalls," *European Copyright User Platform*. Preprint.
- Neal, James G. 2002. "Copyright Is Dead... Long Live Copyright," *American Libraries*, 33(11): 48-51.
- Nimmer, Raymond T. "Breaking barriers: The relation between contrac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ttp://www.law.berkeley.edu/journals/btlj/articles/voll3/Nimmer/html/text.html>>.
- Okerson, Ann. 1996. "Buy or Lease? Two Models for Scholarly Information at the End(or the Beginning) of an Era," *Daedalu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25(4): 55-76.
- _____. 1996. "Licensing Perspectives: The Library View," Given at the ARL/CNI Licensing Symposium held in San Francisco on December 8.
- _____. 1999. "The LIBLIGENCE Project and How it Grows," *D-Lib Magazine*, 5(9).
- Oppenheim, C. 2000. "Does Copyright have any Future on the Internet?" *Journal of Documentation*, 56(3): 279-298.
- Woodberry, Evelyn. 2002. "Copyright vs. Contract: Are They Mutually Exclusive?"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32 i.e. 33(4).
- 〈분석 대상 라이선스 계약모델〉
 CNSLP/PCLSN 라이선스
 <www.cnslp.ca/pr/achievements/CN_SLP-License-12Feb01.doc>.
- NESLi2 Licence for Journals.
 <http://www.NESLi2.ac.uk/NESLi2__lic__010903.htm>.
- LIBLIGENCE Standard License Agreement.
 <<http://www.library.yale.edu/~license/standlicagree.html>>.
- JSTOR 라이선스
 <www.jstor.org/about/license.html>.
- Cox의 Model Standard License.
 <<http://www.licensingmodels.com>>.

〈부록: 라이선스 계약모델〉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모델

(라이선서의 명칭)(이하 “갑”이라 한다)과 (라이선서의 명칭)(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의 요강 및 첨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이하, 모두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 음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주기: 이는 국내 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체상금을: {주기: 이는 국내 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기간:

기타사항:

첨부 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별표1: 인증된 이용자(이하 “별표1”이라 한다)

별표2: 라이선스 자료 및 접근 방식(이하 “별표2”라 한다)

별표3: 대금지불내역 및 지불일정(이하 “별표3”이라 한다)

별표4: 이용자 데이터(이하 “별표4”라 한다)

별표5: 요청 이용 데이터(이하 “별표5”라 한다)

20 년 월 일

(갑) : 라이선스 이용기관

(인)

(을) : 라이선스 제공기관

(인)

계약일반조건

{주기: (1)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조항들을 ([]) 괄호로 묶어 나열하였다. 쌍방의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적절한 조항을 선택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2) 컨소시엄의 경우 “갑”이라 함은 컨소시엄 및 컨소시엄 회원을 의미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인증된 이용자) “갑”의 현 교수진(전임, 객원, 연구교수 및 시간강사 포함), 직원, 그리고 “갑”에 등록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갑”의 교내 및 이들이 근무하거나 연구하는 여타 장소로부터 보안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갑”에 의해 패스워드나 여타 인증을받은 자.
 2. (방문 이용자) 인증된 이용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갑”의 도서관이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안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을 의미하며 필히 “갑”의 도서관 내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업적 이용) 판매, 재판매, 대여, 전송, 고용 혹은 여타 이용 형태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라이선스 자료의 이용.
 4. (강의용 편집교재) 교육을 목적으로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교직원이 편집한 자료.
 5. (전자적 보존) “갑”이 그 학생에게 제공하는 특정 교육 과정과연계되어 그 학생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갑”이 보안 네트워크에 제작하여 저장해 놓은 전자 복제물.
 6. (대금) “별표3”에 설정된 금액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라이선스 자료) “별표2”에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다.
 8. (지불 일정) “별표3”에 설정된 대금 지불 일정.
 9. (구내) “별표4”에 설정된 바와 같이 IP주소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갑”의 물리적 구내.
 10. [(“을”의 대행사) “을”과 “을”의 대행사간의 합의에 따라 “을”을 대행하도록 “을”에 의해 지명된 제3자로서, “을”을 대행하여 라이선스를 수행하고 본 계약 하에 놓인 “을”의 여하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11. (보안 네트워크) 로그인 시점에서 “갑”에 의해 허락된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하며 이들의 수행이 “갑”에 의해 규제되어지는 네트워크.
 12. (서버) “을”의 서버이든 제3자의 서버이든 “을”에 의해 지정된서버로서 라이선스 자료

가 탑재되어 접근되어지는 서버.

13. (이용 데이터) "별표5"에 명시된 데이터 및 보고 사항.

제2조 (계약의 목적)

- ① 이 계약에 의해 "을"은 "갑"의 인증된 이용자가 어디에 있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교수, 사적 연구 및 관리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별표 2에서 명시된 라이선스 자료 및 접근 방식의 이용을 통해 라이선스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비배타적이며 비양도성의 권리를 부여한다.
- ② 이 계약은 이 계약일로 시작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해지되지 않는 경우 20년 월 일로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다.
- ③ "을"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갑"과 그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 이용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출판되고 대금이 지불된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을"이나 "을"이 지정하는 제3자의 서버 상의 해당 자료에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접근을 통해서] ["갑"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중앙 아카이브 시설로 쌍방에 의해 합의된 전자 매체상의 아카이브 복제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지속적인 아카이브 접근 및 이용은 [무료이며] 이 계약 내용 및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3조 (허락된 이용)

- ① "갑"은 아래의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라이선스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 1.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 의해 라이선스 자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캐싱을 수단으로 하여 라이선스자료의 일부를 자관 서버에 전자적으로 복제해둘 수 있다.
 - 2.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는 서버로부터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라이선스 자료의 통합 저자명, 논문명, 키워드 색인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 3. 개별 인증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단일 논문의 인쇄 복제본 혹은 전자 복제본 1부를 제공할 수 있다.
 - 4. 인증된 이용자의 내부 마케팅이나 테스트 혹은 연수를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 ② 아래의 제6조에 따라 인증된 이용자[및 방문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을 할 수 있다.
 - 1. 라이선스 자료를 탐색, 열람, 검색 및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2. 사적 이용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3.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한 부 출력할 수 있다.
 4. 라이선스 자료의 개별 논문 혹은 아이템의 복제본 1부를 인쇄 형태 혹은 전자 형태로 여타 인증된이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에서의 어느 것도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합의관할)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법적 권리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4조 (도서관 상호이용)

- ① [“갑”은 아래 제6조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아닌 조사연구 혹은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별 문헌의 전자원본에 대한 인쇄 복제본을 [“갑”과 동일 국가내] 다른 도서관의 인증된 이용자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혹은 [Ariel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 파일 전송 후 전송 받은 도서관에서 해당 파일을 인쇄 후 즉시 삭제시키는 경우에 한해 전자 파일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혹은
- [“갑”은 아래 제6조에 따라 상업적이용이 아닌 조사연구 혹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혹은 인터넷이나 그 외의 것을 통한 전자적 송신을 통해 전자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별 문서의 복제본 1부를 다른 도서관의 인증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혹은
- [위 제3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적 연구나 그 외의 것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대한 복제본 한 부를 또 다른 도서관 내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합의한다.]

제5조 (강의용 편집 교재 및 전자적 보존)

- ① [“갑”은 아래의 제6조에 따라, “갑”의 기관에서 행해지는 비상업적 교육 과정에서 “갑”의 인증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쇄 형태의 강의용 편집교재 [및 전자적 보존형태]로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취합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는 발췌되는 저작물의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등의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도록 한다. 이들 자료가 더 이상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에 의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혹은
- [“갑”은 사전에 “을” {혹은 “을”의 대행사}의 서면 허락 없이 [강의용 편집교재] [및] [전자적 예비 장서] 형태의 라이선스 자료의 전부 혹은 어느 일부를 취합할 수 없다. 이런 서면 허락의 경우에는 그런 이용에대한 추가적인 내용 및 조건이 설정 될 것이다.]

제6조 (이용의 금지와 사전협의)

- ① “갑”이나 인증된 이용자 혹은 방문이용자 누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금한다.
 1. 저자명 혹은 출판사의 저작권 경고 혹은 여타 라이선스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식별 혹은 권리 포기 수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여하한 목적으로든 라이선스 자료의 여러 발췌분을 인쇄 형태 복제본으로 혹은 전자 형태 복제본으로 조직적으로 만드는 웹크롤러와 같은 소프트웨어나 여타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3.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혹은 “갑”과 “을”이 합의하는 별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서버에 탑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이용인 경우에는 “을”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을”의 서면 허가를 얻도록 한다.
 1. 여하한 상업적 이용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이 계약에 따라 허락된 인증된 이용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라이선스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조직적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3. 이 계약에서 허락된 이외에 라이선스 자료, 라이선스 자료에 기초한 저작물, 혹은 이를 여타 다른 자료와 조합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게 컴퓨터 화면 상에 보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외에 혹은 이 계약에서 달리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변경하거나 요약하거나 채택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대금 및 그 지급방법)

- ① 이 계약에서 합의된 “별표3”의 대금 지불 내역 및 지불 일정에 따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제8조 (“을”의 보증 및 책임의 범위)

-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이용되는 라이선스 자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혹은 여타 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갑”에게 보증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서 제시하는 바 대로 라이선스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갑”에게 보증한다.
- ③ “을”은 “갑”에 의한 이용이 제3자의 저작권 기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갑”에 의한 여하한 법적 행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하한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및 경비(합리적인 법적 전문적 비용을 포함하여)에 대해 “갑”을 면책하고 “갑”의

손해배상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갑”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갑”의 면책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 여하한 이유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이 면책은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을”은 서버, “을”의 자체 네트워크, 라이선스 자료를 지원하는 “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적용할수 있는 통산 부정기 가동시간이 일시에 _____시간 이상, _____부터 _____까지의 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을 것임을보증한다.]
- ⑤ 이 계약에서 제시된 이외에 “을”은, 디자인, 라이선스 자료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 특정 목적을 위한 이용의 타당성 등을포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하한 주장이나 보증도 하지 않는다. 라이선스 자료는 ‘그 상태 그대로’ 제공되어진다.
- ⑥ 이 조 제①항에 제시된 바 이외에는 여하한 상황에서도 “을”은 라이선스 자료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하한 특별한, 우발적인 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갑” 혹은 인증된 이용자를 포함하는 여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을”의 손해배상 누계총액은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제9조 (“을”의 이행의무)

-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의무를 갖는다.
 1. “을”은 “별표3”에 명시된 매체, 포맷 및 일정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가 “갑”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은 라이선스 자료에 규격상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적어도 [30일][60일][90일]일 이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이, 대금, 납기 및 기타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갑”에게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그러한 변경을 이 계약의 제12조 제①항 2호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을”은 라이선스 자료가 인쇄 버전의 출판일[이 되기 { }일 이전에] [로부터 { }일이 내에] [보다 늦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특정 저널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계약 시점에서 그런 저널은그 이유와 더불어 명시되어야 한다.
 3. “을”은 제10조 제1항 3호 따라 “갑”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인증된 이용자와 방문이용자가 라이선스 자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정기 검진은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 요구가 비교적 낮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정기 검진 이외에는 24시간 기준으로 언제나 “갑”과 인증된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자료가 이용되도록 한다. 서버 혹은 “을”의 지역 네트워크 혹은 “을”의 인터넷 서버

스 제공자에게 직접 적용 가능한서비스의 중지 혹은 정지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② “을”은 언제든지 라이선스 자료로부터 혹은 라이선스 자료로의 타이틀 및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아이টে을 취소 혹은 추가 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을”은 “갑”에게 그러한 변경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하한 변경내용이 “갑”에게는 실제로 라이선스 자료가 전보다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그러한 변경을 이 계약의 제12조 제①항 2호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을”은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편찬해야 한다.
- ④ 이용 데이터의 발표가 개별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그 탐색자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사생활보호에 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과 관련되는 그러한 이용 데이터를 “갑”에게 밝혀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허락 없이는 “갑” 혹은 인증된 이용자 혹은 방문이용자에 대한 통계적인 이용 정보를 다른 측에 발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 ⑥ “을”은 “갑”이 라이선스 자료 및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있어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갑”의 이행의무)

{주기: 이 조의 제①항은 컨소시엄 계약인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컨소시엄의 이행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제②항은 컨소시엄 회원의 이행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컨소시엄 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인 경우에는 제②항만을 “갑”의 이행의무로서 명시한다.}

- ①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의무를 갖는다.
 - 1. 이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2. 컨소시엄이 이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위반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 그 즉시 회원과 협의에 들어가 제12조 제⑦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30일 이내에 위반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은 회원과 협의에 들어감과 동시에 “을”에게도 이러한 위반 내용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 3. 이 계약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 제①항 3호에서의 의무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원이 그러한 정보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 컨소시엄은 “을”에게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늦어도 10일 이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 ② [회원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의무를 갖는다.
 - 1. 인증된 이용자와 방문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자료 내의 지적재산권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

고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회원] [“갑”]이 받게 될 제재를 알려주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대해 이들에게 통지해주고 인증되지 않은 이용이나 본계약에 대한 여타 위반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 의해 이 계약 내용 및 조건이 지켜지는 지 감독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여하한 이용이나 여타 위반을 알게 되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활동이 중단되는 동시에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도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4. 모든 인증된 이용자와 이들의 접근 정보에 대해 완벽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여, “을”이 인증된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삭제, 혹은 여타 변경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5. 인증된 이용자와 방문이용자만이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이 허용됨을 확실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6. “갑”이나 인증된 이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혹은 “갑”이 이 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을”에 의한 여하한법적 행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하한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및 경비(합리적인 법적 전문적 비용을 포함하여)에 대해 “을”의 면책을 보증한다. “갑”이 그런 위반의 사유가 되거나, 알면서도 지원을 하거나, 실제로 위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이후로도 그런 위반을 지속적으로 묵과하거나 하지 않는 한 인증된 이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내용상의 위반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쌍방에 의한 이행)

- ① 어느 일방이나 상대방의 지적재산권, 기밀정보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갑”과 그 인증된 이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을 합의한다. 그러한 데이터는 라이선스 자료와 직접 관련된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으며 종합된 형태로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특정 이용자의 신분과 이용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여하한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 ① 제2조 제②항에 따라 자동 갱신이 되는 이외에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갑”이 이 계약에서 제시된 대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하고 그러한 불이행을 “을”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는지 [30일] [60일] 이내에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
 2. “을”이 이 계약 내용을 현실적으로 위반하고 “갑”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는지 [30일] [60일] 이내에 그 위반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
 3. “갑”이 의도적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위반하고 출판사에 의한 서면 통지가 있는지 [30일] [60일] 이내에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
 4. 어느 일방이 지급불능자가 되거나 파산 혹은 이와 유사한 외부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경우
- ② 해지 시점에서 이 조 제③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질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한 의무를 제외하고 쌍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③ 본 계약의 해지 시점에서 “갑”이나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는 그러한 해지가 “갑”에 의한 계약 위반으로 본조 제1항 1호 및 3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구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지 시점까지, 데이터베이스 콘텐츠를 아카이브 형태로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우 그러한 지속적인 접근은 그러한 위반이 있기 이전까지 출판된 라이선스 자료에 한해 제공될 것이다.
- ④ 이 계약의 해지 시점에서 이 조 제①항 1호 및 3호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해지인 경우 “갑”은 해지 즉시 라이선스 자료가 인증된 이용자 및 방문이용자에게 이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⑤ 이 계약의 해지 시점에서 이 조 제①항 2호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해지인 경우, “을”은 대금 지불은 되었으나 만료되지 않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⑥ “갑”이 의도적으로 실제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을”로부터 통지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그 위반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지 통지를 보냄으로써 이 계약에 따라 “갑”에게 부여한 이용권리를 해지시킬 수 있다. 해지 통지를 준 시점에서 “을”은 본 계약 기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을 회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⑦ “을”은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을”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거나 이 계약 내용의 위반이 되어 서버의 수행력이나 보안을 위협하는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접근을 중단한 후 즉시 “을”은 “갑”에게 위반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명시하여 통지를 한다. “을”은 그러한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갑”이 그러한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행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갑”의 접근을 재개해야 한다.

제13조 (총칙 및 기타사항)

- ① 이 계약은 쌍방의 전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며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이 계약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있었던 대화, 이해, 및 합의를 대신한다.

- ②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딸린 별표에 대한변경의 경우, “갑” 및 “을”의 협의에 따라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갑” 및 “을”의 협의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 이유 등을 명기한 서면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변경 계약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이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양도될 수 없으며, 다른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을”의 대행사, 서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행사와 이 계약의 의무를 도급계약 할 수 없다.
- ④ [컨소시엄은 회원을 포함하는 회원을 두고 있는 비영리기업 대리인에게 라이선스 자료 내의 전부 혹은 일부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컨소시엄이 그러한 권리를 그러한 대리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도가 있기 직전까지 회원이 아니었던 양수인에게 이 계약에 따른 여하한 이용허락이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라이선스 자료상의 전부 혹은 일부 권리가 또 다른 출판사에게 양도되는 경우, 출판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유지됨을 확신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⑥ 어느 일방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 계약서 상에 설정된 수취인 주소로 혹은 상대방에게 통지를 위한 주소로 통고 받은 그러한 여타 주소로 등기우편, 택배 혹은 팩스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등기를 통해 보내진 그러한 통지는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4일] [5 영업일] 내에 전달되어질 것으로 간주된다. 택배 혹은 팩스를 통해 보내진 그러한 통지는 택배 혹은 팩스를 받은 일자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⑦ 전쟁, 파업, 홍수, 정부 규제, 권력, 텔레커뮤니케이션 혹은 인터넷 불통, “서비스 거부” 혹은 유사 사태, 네트워크 설비의 손상 혹은 파괴 등 통제를 벗어나는 환경의 결과로 인해, 어느 일방도 이 계약의 여하한 조항을 수행하는데 지연이 있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계약의 위반 혹은 위반에 대한 원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⑧ 이 계약의 여하한 무효성 혹은 비강제성의 조항은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존속 혹은 강제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⑨ 어느 일방도 이 계약의 조항에 따른 다른 일방에 의한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후 그러한 이행에 대한 완전한 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항 자체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⑩ 이 계약의 해석을 놓고 쌍방이 불일치 하는 경우 혹은 일방이 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 위반한 경우, 쌍방은 협의를 통해 불일치 해결의 타당성을 논하도록 한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합의관할, 중재 또는 조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A안 (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해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B안 (중재)

이 계약에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이 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

C안 (조정)

이 계약에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이 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① 이 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K C I